

일본에 입국하시는 여러분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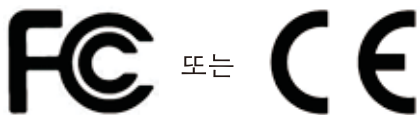
Wi-Fi단말기와 Bluetooth 단말기를 소지하고 일본에 입국하실 경우, 일본의 기술기준 적합증명 등을 취득하여 **기술적합 마크가 표시된** 것만 일본에서의 사용이 인정됩니다.

단, 입국일에서 **90일 이내**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단말기는 사용이 인정됩니다.



Wi-Fi단말기

미국의 **FCC인증**, 유럽의 **CE마크**가 표시된 것, 및 **Wi-Fi Alliance 인증** 사실이 표시(인증 로고)된 것



+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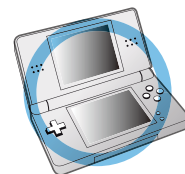
Wi-Fi 인증 로고의 예



※기기 본체에 표시가 없는 경우,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.

스마트폰 등을
공중무선랜 스팟에
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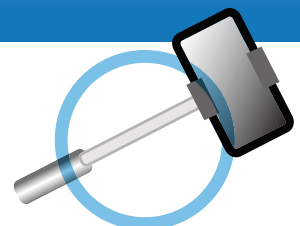
단, 2.4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
경우는 테더링에 의한 통신도 가능합니다.



무선랜 루터

Bluetooth 단말기

Bluetooth SIG 인증 사실이 표시(인증 로고)된 것



- ※주의
1.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2.4GHz대(실내외), 5.2GHz대(실내), 5.3GHz대(실내), 및 5.6GHz대(실내외)에만 한정됩니다.
 2. 기술적합 마크를 취득하지 않고 입국일에서 90일을 경과한 후에도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 3. 컴퓨터 등의 단말기를 유선접속하는 경우에는, 이더넷(10BASE-T, 100BASE-TX, 1000BASE-T)에 의한 접속일 경우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한하여 전기통신 사업자의 사전 검사 없이도 사용이 인정됩니다.